

##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 반영
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691)

▶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 를 반영하여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-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‘판매비’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,

-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를 반영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.

- 이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분양촉진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<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“판매비” 반영 >

- ▶ 추진배경 :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‘판매비’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
- ▶ 주요내용
  - ①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시 “판매비” 반영
- ▶ 시행일 : 2013.12.5.